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1 발의연월일: 2020. 6. 22.

발 의 자:조승래・이정문・김민기

유정주 • 도종환 • 이상직

이상헌 · 이재정 · 홍성국

박성준 · 김종민 · 양정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의학·약학·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의학·약학·간호 계열 대학이나 전 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인원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의학·약학·간호 계열의 대학 입학의 경우 지역의 우수인 재 중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안 제1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모집"을 "입학"으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모집"을 "입학"으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 ③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부터 제4
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	
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u>포</u>	<u>포함</u>
<u>함한다</u>)을 선발할 수 있다.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	②
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	
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	
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u>포함한다</u>)의 수가 학생 <u>모집</u>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u>다입학</u>
되도록 <u>노력하여야</u> 한다.	
	<u>하여야</u>
<u><신 설></u>	③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기의학전문대학원, 기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④ (생 략)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 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u>자</u> -----임하----------하여야----.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